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8일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5년 9월 10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

나.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12.30)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동별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안 제1조)
- 복지위원의 위·해촉, 임기, 정수, 직무, 의무 사항 기재(안 제2조 ~ 안 제7조)
- 복지위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 증표교부 등 규정(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미시 복지위원의 위·해촉, 임기, 정수, 직무 및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의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